

정년보장심사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26조의3에 따라 교원의 정년보장 임용을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심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, 단과대학장 및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,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.

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. 단, 교무처장은 제외한다.

제3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·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2.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인성지도,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원으로서의 근무상태 및 학교에 대한 기여도
4. 교육관계 법령 준수 등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5. 자체평가서와 학과 소속교수평가서
6. 기타 정년보장심사에 관한 사항

제6조 (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 (비밀엄수 의무)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기간은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8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 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교무팀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10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 <2014 제3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5조제5호 개정 <2014 제11차 교무위원회>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 제1항 개정 <2020 제3차 교무위원회>)